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1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55439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3. 10. 13.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1. 피고가 2022. 11. 28. 원고에게 한 취득세 36,360,000원, 지방교육세 1,212,00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1

가. 원고와 망 B(2022. 11.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부부지간이고, C는 원고와 망인 사이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2022. 6. 13. 원고와 사이에 망인 소유의 ○○ ○○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6,360,000원, 지방교육세 1,212,0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자 망인은 자녀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하기로 하고 2022. 6. 22. 법무법인 F를 방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와 별도로 망인과 원고는 2022. 9. 7. 공증인 G 사무소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2022. 6. 21.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22. 11. 17. 원고에게 취득세 36,831,950원, 지방교육세 1,227,730원 합계 38,059,68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2022. 11. 23.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 취득세 등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1. 28. 원고가 당초 증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22. 9. 7.에서야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공증을 받았으며,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1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며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증여계약 체결일이자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인 2022. 6. 13.로부터 10일이 지나지 않은 2022. 6. 21. 이미 해제되었고, 그 사실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일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후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일 때문에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과 원고는 2022. 6. 21.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들의 자녀인 C에게 유증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2022. 6. 21. 이 사건 유증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1

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무상취득인 증여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한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는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면서 제2호에서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다(이하 제2호 부분을 '이 사건 예외규정'이라 한다).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사실을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정증서는 2022. 9. 7.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1

로 이 사건 예외규정에 부합하는 공정증서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인 2022. 6. 22. 작성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망인과 원고는 부부지간이고 C는 그들 사이의 자녀인 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지 10일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증여계약과 상충되는 내용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된 점, 망인과 원고가 2022. 9. 7. 공증인 G 사무소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2022. 6. 21.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그로부터 몇 달 뒤 망인이 사망하자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점 등 관련자들의 신분관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망인과 원고가 2022. 6. 21.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자녀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예외규정은 당초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공정증서가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1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위 규정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공증받은 공정증서로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이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합의 하에 해제일자를 소급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예외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다) 비록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직접적인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인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인 2022. 6. 21. 이 사건 증여계약을 실제로 해제한 점, 이 사건 예외규정은 실제와 달리 해제일을 소급함으로써 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증서의 작성시기에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일 뿐 공정증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문구 자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당해 공정증서에 의해 계약의 해제가 입증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해제되었음이 입증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1

관계 법령

■ 지방세법

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1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